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12. 13.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8년 11월 13일
-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2018년 11월 20일
- 라. 상정일자: 제2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위원회(2018. 12. 1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담당관 김연주)

가. 제안이유

- 영등포 스마트메디컬(Smart-Medical)특구 지정에 따른 효율적인 특화사업추진과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해 의료관광 특화도시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2조에 따라 특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대외적 표시 및 특화사업의 범위(안 제3조, 제4조)
- 규제특례사항(안 제5조)

- 규제특례의 사후관리(안 제6조)
- 특화사업자의 책임 및 의무(안 제7조)
- 재원(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최광목)

- 본 제정 조례안은 2017.12월 영등포구가 스마트메디컬특구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의료관광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총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 하였으며,
 -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특구의 대외적 표시와 특화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특례규정을 명시한 내용으로서
 -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특화사업을 추진하거나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고용추천서를 발급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특화사업 추진 시 도로점용,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 「의료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특화사업 추진 시 의료법인이 외국인환자나 동반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규제특례의 사후관리사항, 특화 사업자의 책임 및 의무, 특화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에 소재한 풍부한 의료자원 활용과 다양한 문화·예술·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조례 제정으로 의료기관의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는 등,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여 스마트 메디컬 특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35 호
----------	--------

제출연월일: 2018. 11.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영등포 스마트메디컬(Smart-Medical)특구 지정에 따른 효율적인 특화사업 추진과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해 의료관광 특화도시를 구현하고자 영등포 스마트 메디컬 특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특구의 대외적 표시 및 특화사업의 범위 규정(안 제3조, 제4조)
- 다. 규제특례사항(안 제5조)
- 라. 규제특례의 사후관리(안 제6조)
- 마. 특화사업자의 책임 및 의무(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인권·부패·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 라. 입법예고(2018. 10. 18. ~ 11. 7. / 20일간) 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 스마트메디컬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 스마트메디컬 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법 제3장에서 정하는 규제특례 중 이 조례 제5조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3. “특화사업”이란 특구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특화사업자”란 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대외적 표시) 특구의 대외적 표시는 “영등포 스마트메디컬 특구(The Smart - Medical Zone of the Yeongdeungpo)”라 한다.

제4조(특화사업의 범위)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관광 기반시설 조성
2.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3. 의료관광 병원시설 확충
4. 그 밖에 영등포 스마트메디컬 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한한다.

제5조(규제특례 사항) ① 구청장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하고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거나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사증(査證) 발급 관련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차량 등의 도로통행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의료관련 특화사업자인 의료법인에게 법 제30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④ 구청장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는 법 제32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의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구청장은 축제 등 특화사업을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는 법 제33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특례의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규제특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의 과정을 조사하거나 특화사업자에게 특화사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해당 특화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특화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특화사업의 내용과 특화사업자가 실제로 시행하는 사업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특화사업자가 구의 특화사업계획에 맞지 않거나 특화사업자로서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5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특화사업자의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특화사업자의 책임 및 의무) 특화사업자는 구와 협력하여 구의 특성에 부합하는 특화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재원) 특화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비, 시비, 구비 및 민간 부담금으로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